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

중국 발 멜라민 파동은 국제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먹을거리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을 재검토하고 관련정책을 새로이 수립하는 등 식품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식품안전정책을 마련하고자 분주히 노력하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노력에 식품업계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는 식품업계가 존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번에 마련된 식품안전정책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계의 수용능력이나 정부차원의 사후관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책수행과정 중 문제가 예상되므로 각각의 정책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골자로 산업계 의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별첨 1)

- 식품집단소송제도는 식품안전사고 예방효과가 불투명하고,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합니다.

둘째,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확대에 대한 의견(별첨 2)

- GMO 표시제는 현행규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셋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별첨 3)

- 어린이 기호식품 중 특정영양성분에 대한 신호등 표시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 합니다.

넷째,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별첨 4)

- 「식품 등의 이물보고 등」 및 「소비자 불만사례 등의 신속보고 등」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선진 제외국의 관리기준과 정부 부처간의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재고되어야 합니다.

상기 산업계 의견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은 각 사안별로 구분하여 본 정책 건의 자료에 수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정책 수행자로서의 식품업계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산업계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식품안전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1

한 국 식 품 공 업 협 회	회 장	박 승 복
중 소 기 업 중 앙 회	회 장	김 기 문
대 한 제 과 협 회	회 장	서 정 웅
대 한 제 당 협 회	회 장	박 종 현
한 국 급 식 협 회	회 장	박 홍 자
한 국 건 강 기 능 식 품 협 회	회 장	이 병 훈
한 국 도 시 락 식 품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김 호 균
한 국 떡 류 식 품 가 공 협 회	회 장	김 재 현
한 국 식 품 수 출 입 협 회	회 장	이 정 식
한 국 압 착 식 용 유 업 중 앙 회	회 장	하 두 호
한 국 어 육 연 제 품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박 태 수
한 국 연 식 품 공 업 협 동 조 합 연 합 회	회 장	최 선 윤
한 국 유 가 공 협 회	회 장	이 규 태
한 국 육 가 공 협 회	회 장	권 태 경
한 국 인 삼 제 품 협 회	회 장	노 중 현
한 국 장 류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오 무
한 국 전 분 당 협 회	회 장	한 종 태
한 국 조 미 료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이 연 수
한 국 제 빵 제 과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이 두 순
한 국 제 함 식 품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도 운 기
한 국 추 출 가 공 식 품 업 중 앙 회	회 장	신 영 철
한 국 통 조 립 식 품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최 희 열

1.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최근의 식품안전문제는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에서와 같이 원료 및 가공제품에 예상치 못한 유해물질의 출현과 함께 수입식품의 위해성 논란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은 세계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태로서 최근 가장 광범위한 식품안전 사고로 우리나라도 비껴가지 못하고, 수입식품 중에서 화학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되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업계는 먹을거리에 대하여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자성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위협에 대하여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전사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책임은 1차적으로 우리 식품업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징벌적 의미의 지나친 규제는 식품기업의 경영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선의의 피해자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멜라민 파동에 대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의 하나인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취지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고 위해식품으로 인한 사후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 강화이지만 집단소송 제도가 가장 발달 된 미국에서조차 개인별 소송의 실익이 없고, 소의 남발과 복잡하고 장기간의 소송기간 등의 부작용으로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는 금년 1월부터 소비자기본 법에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식품관련 소송건수는 1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후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처벌보다는 사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식품안전관련법률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사후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 등의 정비를 통하여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충분히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건의요지

첫째,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2007.3월)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2008.1월)를 시행하고 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식품안전사고 예방효과가 미흡합니다.

- 집단소송제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인지 식품안전보장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좋은 대안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식품안전사고의 방지나 예방효과보다는 대형식품회사를 상대로 한 비만소송 등이 대부분으로 소비자나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 대부분 집단소송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셋째,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를 모두 도입한 외국의 입법례가 없습니다.

- 식품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단소송제도와 단체소송제도를 모두 도입하는 국가가 됩니다. 선진외국의 경우 영미법계 국가들은 집단소송제도를 채택하고, 대륙법계 국가들은 단체소송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해 단체소송제도만 도입했습니다.

넷째, 비양심소비자(블랙컨슈머)의 급증 및 기업이미지 훼손 크게 우려됩니다.

- 최근 이물과 관련하여 블랙컨슈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남발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제기 사실 만으로 판매금감 및 기업이미지 추락 등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등이 우려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식품안전사고의 예방시스템 구축 강화가 필요합니다.

- 식품집단소송제도는 사전적인 예방 등 실효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강화에 정부와 식품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국내 식품산업의 시장구조는 전체 식품제조업체의 90%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로 상대적으로 소비자 안전관리시스템이 취약한 실정으로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중소식품업체의 맞춤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및 금융 등 적절한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확대에 대한 의견

최근 식량위기와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에 따라 미국, 브라질, 인도 등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GMO 작물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GMO작물의 청정국가로 알려진 중국조차도 대규모의 GMO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과 장기적인 식량 확보라는 국가 전략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자 OECD 최하위권의 곡물자급률(27.8%, 29개국 중 26위)을 기록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더욱이 2007년부터 시작된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모든 식품의 비용상승을 유발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식량수급 여건을 갖고 있는 EU의 GMO표시제와 동일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일부 품목에 한정되었던 것을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주류까지 확대하고 GMO 성분(DNA)이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GMO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하여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부분은 정부가 안전성 평가심사결과 식용으로 승인한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표시제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GMO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주류까지 표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품업계는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본 의견서는 GMO 식품표시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전면 확대하기에 앞서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회·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충정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정책과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제도 시행에는 국민의 세금이 비용으로 소요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GMO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대폭 확대하기에 앞서 국가경제와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제도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득실, 제도운용의 관리여건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식품업계는 진지한 검토 끝에 현 단계에서 표시제의 전면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일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GMO 표시제 확대 여론이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표시제 확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식품업계의 수용능력이나 정부차원의 사후관리 능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국민들이 GMO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와 식품업계가 협력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GMO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제도의 확대시행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건의요지

첫째, GMO검사가 불가능한 가공식품은 현실적으로 사후관리가 어려워 표시제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 GMO검사가 불가능한 가공식품에 대한 서류증명(구분유통 증명서 및 정부증명서)이나 이력 추적제에 의한 사후관리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식품업계 등 이해당자자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과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GMO표시제 확대에 의한 소비자 이득(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그러나, GMO표시제 확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내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 현 상황에서의 표시제 확대는 소비자 비용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식품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과 국가경제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 식품산업의 비용 상승은 크게 네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하게 됩니다.
- 국내 식품산업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국내 식품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됩니다.
- 주요 식품업체의 70%가 이미 해외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 결국, 국내 총생산(GDP)의 감소 등 국가경제 손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국가정책과 식량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국내 식품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 표면적 제도가 아닌 국익 중시의 식량전략부터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째, 여론에 떠밀린 정책적 모순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해 허가한 GMO 식품에 대해, 일부 여론에 떠밀려 다시 안전하지 않다고 낙인찍는 것과 같습니다.
- GMO 대신 중국산 식품이 우리의 식탁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Non-GMO는 필요한 만큼 구할 수도 없는 만큼, 수급대책이 중요합니다.
-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면 '식품'에 대해서만 표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3.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 식품업계도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자체적인 노력들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취지에 식품 업계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제시된 '신호등 표시제'는 이미 전년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에 포함되었다가 국회와 정부, 특히 식약청 실무자 및 식품업계가 공동으로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업계나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도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식품업계는 그동안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적합한 제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가', '실제로 어린이들의 올바른 선택과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검토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건의요지

첫째, 신호등표시제는 어린이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본인의 하루 전체 섭취량을 기준으로 영양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신호등표시제와 같이 개별 식품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먹어도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 짓는 것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균형화된 식단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표시제가 제시하는 먹어도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 짓는 색깔 표시 기준도 과학적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현재 식약청에서 검토 중인 신호등 표시의 색깔 구분 기준은 미국 FDA 영양표시에서 제시하는 '고', '저' 기준을 부정확한 방법으로 임의 적용한 것으로 식품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기준이 못 되며, 실제 섭취량이 아닌 100g을 기준으로 색깔을 구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과 같이 일부 영양정보만 강조하는 것도 식품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당,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로리를 비롯한 다른 필수 영양소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만일 위의 네 가지 성분만 강조한다면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주스, 치즈, 시리얼 같은 좋은 식품도 빨간색 표시로 인해 나쁜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호등표시제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신호등표시제는 개별 제품에 적용해서 보면 색깔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해하고 활용하기에 쉬은 듯하지만, 너무 색깔에만 의존해서 제품을 선택하게 되다 보니, 동일 색깔이 적용된 제품 간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호등표시제를 실제 어린이 기호식품에 적용해본 결과, 약 93%의 제품에 빨간색이 표시되게 되는데, 신호등표시제는 식약청 기준으로 당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에는 모두 빨간색이 적용되기 때문에, 빨간색만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할 경우 당이 11% 들어있는 제품과 70% 들어있는 제품 간 구별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빨간색이 표시된 식품은 얼마까지 먹어야 되는 것인지, 노란색이나 녹색이 표시된 식품은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등 어떤 표시의 제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 것인지를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식약청에서 제안하듯이 신호등 표시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인 하루 권장 섭취량 대비 영양성분 함량을 함께 표시한다면, 오히려 어린이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기에 더 어려울 것입니다.

식품 영양 표시제는 아무리 쉬운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호등표시제 도입에 앞서, 어떻게 교육할 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신호등표시제가 실제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호등표시제는 어린이 식생활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식과 불량식품에는 적용이 어려워 실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빨간색 신호등이 표시된 제품을 어린이들에게 못 먹게 할 경우, 오히려 숨어서 먹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표시제 도입에 앞서, 이 제도가 실제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신호등표시제는 해외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신호등표시제는 해외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신호등표시제는 영국의 일부 유통업체만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현재 영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받고 있는 표시제는 영국 전체 가공식품의 50%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영양성분 전면표시제(GDA, Guideline Daily Amount)' 방식¹⁾입니다. 이는 필수영양소의 하루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율을 제품 포장 전면에서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유용한 표시제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식품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DI(Daily Intake)'란 이름으로 영양성분 전면표시제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EU·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식품에 특정 '건강효과'를 표시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효과표시'는 소비자들에게는 이왕이면 건강에 더 좋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며, 식품업계는 건강에 더 좋은 식품을 만들어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 소비자와 식품업계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시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신호등표시제는 식품업계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유관산업 및 국민경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1) 본 자료에서 언급되는 "영양성분 전면표시제"방식이란, 기존의 영양성분표와는 별도로 주요 영양 정보를 1회 제공량 기준으로 각각의 함유량과 1일 영양소기준치 대비 비율(%)을 알아보기 쉽게 제품 전면에서 표시하는 방식으로, 영국에서는 GDA(Guideline Daily Amount), 호주에서는 %DI(Daily Intake)라고 불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영양성분 완전표시제", "전면영양표시제" 등으로 표기 되기도 함. 본 자료에서는 이를 "영양성분 전면표시제"로 통일해서 사용함.

식품업계는 소비자 관점에서 신호등표시제의 문제점뿐 아니라, 이로 인한 식품업계 및 유관산업, 나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기준으로 신호등 표시제를 적용할 경우, 국내 대표 식품업체 11개사가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기호식품 대상 제품의 평균 93.23%가 하나이상의 빨간색 표시를 적용(2개 이상 표시: 56.46%, 3개 이상 표시: 3.49%) 받게 됩니다. 이는 최소 30%에서 최대 50%의 매출 감소를 유발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 매출액 총 17조원 중, 최소 5조 2천억에서 최대 8조 7천억의 피해²⁾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 업계의 매출 감소는 소매업체, 유통물류업체, 농축산업 등 관련 산업의 침체로까지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가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항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부의 식품 안전 정책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했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는 물론 직접적으로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고, 진정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작은 연구 모임의 연구 결과를 정부 측에 전달함으로써 더 좋은 정책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식품업계 모두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보다 나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확보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모색한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에 해당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마치 업계가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호도하고, 저희들의 순수한 의도를 곡해하고 폄하하고 있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식품업계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있어야 업계가 존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영업 원리에 입각하여 오늘도 각 회사별로 연구소를 통해 좋은 먹을거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음은 물론 균형 잡힌 어린이 식단에 대한 부모님과 교사,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다양한 영양교육 관련 활동들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확보와 비만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다르지 않습니다.

식품영양표시제는 국민의 식생활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식품산업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중 신호등

2)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년

표시제와 연관되어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정부, 학계, 소비자 단체, 식품업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전 세계 다른 여러 방식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 및 입법부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식품업계는 식품 중 이물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종사자 위생관리 강화, 작업환경 및 시설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위해식품 회수지침」 및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등의 고시를 통하여 각 식품 기업에 접수된 모든 소비자 이물클레임에 대하여 즉시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체에 무해한 단순이물까지 보고를 함으로써 아직 제조, 유통, 소비 등 각 단계별 조사에 대한 정부 인프라가 구축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한 소비자 문제 해결이 어렵고, 고객의 감성적 불만만 증대되는 등 식품 이물보고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식품 중 이물관리문제는 인체에 중대한 위해보다는 대부분 단발성 이물로서 위해가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해야 할 “식품안전관리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품질관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이물보고 등」 및 「소비자 불만사례 등의 신속보고 등」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선진 제외국의 관리기준과 정부 부처간의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재고되어야 합니다.

건의요지

첫째, 이물의 용어·정의가 불명확하고 국제적 기준과도 많은 차이가 있어 식품기업이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입니다.

- 국내의 경우 제외국(미국, 호주/뉴질랜드)과는 다르게 위해이물과 품질관리 상 단순이물 등과의 정량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미국,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의 경우 인체 위해도가 높은 이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품질관리 상 단순이물의 경우 업체자체 위생규정을 준수·조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비자의 불만사례 등을 정부에 보고토록 규정하는 것은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기업·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물보고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 시행으로 유통단계 조사에서의 비의도적 피해, 신속 대응 미흡으로 인한 고객 불만 증가 및 블랙컨슈머의 양산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부처 간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내 식품은 주원료에 따라 관리·감독관청이 상이하고 소비자 불만에 대한 해결방법도 일관되지 않아 여러 품목을 동시에 생산하는 식품기업으로서는 많은 혼선이 예상됩니다.